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총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5
----------	-----

2023. 1. 19.(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월 16일

-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감면내용

- 사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함.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된 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1월,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및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행하였음.

- 이에 충북도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 이태원 사고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른 것으로,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감면 지방세 종류 및 내용>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주민세 개인분*	•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유분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산세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지역자원 시설세	•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취득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 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서울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는 답변을 통해 “사회재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15년 사회재난이었던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취득세 및 특정부동산분 등의 지방세 감면동의에 대한 도의회 의결 선례가 있음.
※ 경기도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2015.5.28., 원안가결)
- 이태원 사고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지난 10월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행한 바, “유사한 재해”에 해당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동의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나.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2015.12.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9.>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 12. 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9. 12. 31.>